

1998. 5.

## 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-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
-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

총무위원회

#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자
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	'98. 4. 24	'98. 4. 27	'98. 5. 1	'98. 5. 1	환경미화과장
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증개정조례안	.	.	.	.	기획담당관
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	.	.	.	.	지역경제과장
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 설치조례안	'98. 3. 24	'98. 3. 24	.	.	이영훈의원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).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

#### 1)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전,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.

#### 2) 주요골자

- 환경보전을 위해 시와 시민,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
- 지역환경 영향 검토제를 도입하고 환경위원회를 설치
- 환경보전공로자 수상 및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근거를 마련 함.

## 나.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자치법규 일체정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용 중 관련 법령의 개정, 법문형식 상위법 저촉 및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) 주요골자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 : 3건
- 상호 모순되는 용어의 정리 : 4건
-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의 정비 : 5건
-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정비 : 10건
- 기타 법문 형식에 맞지 않는 사항 정리 : 18건

## 다.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지방물가 안정 및 공공요금 결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요금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
- 위원회 개최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2) 주요골자

- 위원회 개최는 분기 1회로 하며 안전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
-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을 확대 지정코자 함.

## 라.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개발, 향토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은 지방자치시대에

자치역량 배양과 더불어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함양 및 대화합을 위한 중차대한 과업으로

- 그동안 연례 행사적으로 담습해온 문화제 행사를 보다 알차고, 충실한 문화제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제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,
- 또한, 논란이 되어온 문화제 명칭에 있어서 우륵선생에 대한 사료조사 검토 및 설문조사등에 의한 시민 의견수렴 결과 '중원문화제'로의 변경 의견이 지배적이며, 많은 시민들로 부터 추진결과에 대한 명칭 변경 측구의 여론화에 순응하기 위한 것임.

## 2) 주요골자

- 위원회 설치목적, 소재지, 문화제 명칭, 행사 개최시기
- 위원회 구성과 위촉대상위원, 위원장, 부위원장의 직무
- 회의소집, 재정, 위원의 임기 등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

-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창조를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
-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.
- 이에 충주시 환경보전에 관한 각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평화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운영 코자하는 것임.

#### **나.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**

-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용중 관계법령 개정, 법문형식, 상위법 저촉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임.

#### **다.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**

-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
- 실무위원회위원을 1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
#### **라.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 : "생 락"**

### **4. 질의답변 요지**

#### **가.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**

##### **{ 질 의 }**

- 위원회 구성시 환경연합등 환경관계전문가도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##### **☞ 답변**

- 시관계공무원등 환경관계전문가 포함 구성 할것임.

##### **{ 질 의 }**

-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히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관주도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여짐.

☞ 답변

- 환경관련 사업시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관련전문가 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될 것이므로 문제 없다고 봄.

[ 질의 ]

- 제 5조 가공공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배추등 농산물 잔여쓰레기도 일반 폐기물로 규정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.

☞ 답변

- 쓰레기 처리준은 1차 재활용, 2차 소각, 3차 매립 단계를 거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료화 공장 가동시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음.

나.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증개정조례안

- 질의 · 답변 없음.

다.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- 질의 · 답변 없음.

라.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

- 질의 · 답변 없음.

## 5. 심사결과

- 가.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 : 수정의결(수정안:별지)
- 나.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증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다.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라.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 : 보류의결

## 6. 붙임

- 가.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
- 나.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증개정조례안
- 다.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- 라.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

## 【별표】

### (수정안요지)

#### ■ 조례명 :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

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5조 제2항중 '위원은 시관계공무원등'을 '위원은 환경관계전문가 및 시관계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'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중 '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'를 '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'로 한다.

#### < 수정안 대비표 >

제정안	수정안
제15조 ① (생략)  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시관계공무원등 시장이 위촉한다. 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환경업무 주무담당과장으로 한다.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 기간으로 한다  ④ - ⑥ (생략)	제15조 ① (제정안과 같음)  ②----- ----- -----, 위원은 환경관계전문가 및 시관계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----- 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 ④ - ⑥ (제정안과 같음)

## 의 안 철 회 동 의

○ 요 구 : '98. 5. 2. (충주시 기획 13130-240호)

○ 심사결과 : 제32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 제2차 총무위원회('98. 5. 2.)

<질의·답변요지>

### { 질의 }

- 위원회 구성시 시관계공무원이 다수인(7명)을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위원회 성격상 민간인을 많이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?

### ☞ 답변

- 위원회의 운영 성격상으로 각 분야별로 환경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관련전문 공무원이 많이 위촉되어야 할 것임.

### { 질의 }

- 본 안건은 전국적으로 각 시·군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번 회기에 철회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경우 시기적으로 조례제정이 늦지는 않는 것인지?

### ☞ 답변

- 전국 시·군 단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제정 된 곳은 5개소이며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음.